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회견자료

때 : 2021년 6월 24일(목) 14시10분

곳 : 세종 최저임금위원회 203호실

자료 목차

1. 최저임금 인상 방향
2. 최저임금 인상 근거
3. 최저임금제도 개선
4.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현행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원

최저임금인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첫째,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임금의 최저수준 기준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원(2,084,332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多)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수 분포

- 4인 가구(31.23%) > 3인 가구(23.35%) > 2인 가구(20.57%) > 1인 가구(16.24%)

	비혼 단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비	2,084,332	2,112,978	3,104,536	4,410,844	5,749,279
충족률	87.4	86.3	58.7	41.3	31.7

둘째,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함.

-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어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며, 수단인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현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
-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함.

셋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함.

- 2020,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법이 정한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 준수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됨.
- 여기에 지난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나타남.
- 따라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 +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함.
- 한편,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한 결정기준 및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원을 요구함.

I . 최저임금 인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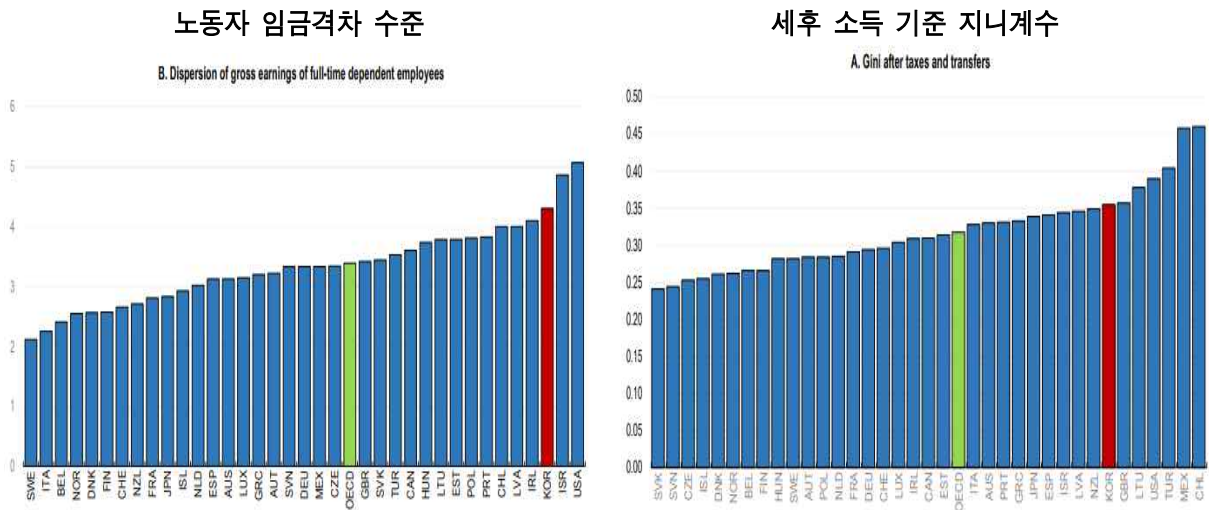
- ILO의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목적은 부당하게 **낮은 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모두에게 성장의 결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그리고 피고용자 및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돕는 것.
- 또한, 최저임금은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음.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촉진**함으로써 **남녀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ILO, 2014: 3)

- 이처럼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임금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구원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하는 데 있음에 주 목적이 있는 것임.

1.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

-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에도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함.



출처 :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 지니계수는 회원국 중 일곱 번째, 임금 불평등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경제구조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구조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는데,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고용 위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인함.

2020년 소득 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천원, %, %p, 전년동분기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소득	1,640	1.7	3,275	0.1	4,628	1.2	6,231	2.0	10,026	2.7
경상소득	1,634	2.0	3,254	0.2	4,602	1.3	6,171	1.9	9,632	1.0
근로소득	596	-13.2	1,882	-5.6	3,031	0.0	4,279	0.0	7,214	1.8
사업소득	279	6.2	672	3.0	953	-5.7	1,236	-5.1	1,827	-8.9
가계지출	1,885	1.4	2,717	-2.4	3,621	-2.3	4,592	0.9	6,643	1.0
소비지출	1,620	1.8	2,188	-1.7	2,775	-3.1	3,435	3.4	4,512	-0.4
비소비지출	265	-0.8	529	-5.1	846	0.3	1,156	-6.0	2,131	4.3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2020. 4/4)

-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하반기 소득이 낮은 1분위 국민의 근로소득은 13.2% 감소했지만, 5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8% 증가하였음.
- 5분위의 근로소득증가율이 1분위의 근로소득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코로나 사태에서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의 피해가 컸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냄.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및 식료품비 증감률

(단위: 천원, %, %p, 전년동분기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소비지출	1,058	3.3	1,637	-2.8	2,202	-6.3	2,893	-3.7	4,210	-0.3
식료품·비주류 음료	235	15.7	288	12.0	361	10.0	460	14.5	560	18.8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2020. 4/4)

- 2020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의 지출부문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은 1분위 가구 105만 8천 원(전년 대비 3.3%), 2분위 가구 163만 7천 원(-2.8%), 3분위 가구 220만 2천 원(-6.3%), 4분위 가구 289만 3천 원(-3.7%), 5분위 가구 421만 원(-0.3%)으로 나타남.

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



출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통계청(21.4.8)

-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급격한 물가 상승(2019년 대비 6.7% 상승) 영향으로 소득 하위 1분위의 소비지출에서 큰 비중(22.3%)을 차지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임.
- 특히,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가장 큰 5분위 가구는 해외여행 금지조치로 인한 자동차 구매 등의 이전 소비가 발생하여 교통(18.2%)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소비에서도 뚜렷한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음.

2. 코로나 사태로 엇갈린 명암

(호황을 누린 재벌대기업vs구조조정 및 실직한 임시일용직)

1) 지불능력 없었던 대기업 법인들은 사상 최대 영업 달성

- 주요 대기업들과 법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 및 삭감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영업이익은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함.

2020년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률

기업명	영업이익(전년대비 증감율)
삼성전자	35조9,939억 원 (29.6% 증가)
현대자동차	1조6,410억 원 (40.9% 증가)
SK텔레콤	1조3,493억 원 (21.8% 증가)
카카오	4,560억 원 (121% 증가)
CJ	1조3,595억 원 (51.6% 증가)

-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9년 만에 부활시킨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대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해 악용되고 있음.
- 주요 대기업인 삼성전자·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역대최저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리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음.

• 삼성전자의 법인세 혜택

-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낸 법인세는 2018년 10조 1,505억 원, 2019년 10조 5,405억 원에서 2020년 2조 4,623억 원으로 8조 원 이상이 감소함. 이에 반해 2019년 매출액은 230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7조 7,700억 원이었고, 2020년에는 매출액 236조 8,100억 원으로 2.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35조 9,900억 원으로 30%나 급등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쇼핑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25.2% 증가한 15조 904억 원¹⁾으로 급성장하며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이익 또한 사상최고치를 달성하였음.

1) 통계청 2021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조 7,303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4.0% 증가

-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배달시장 전체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2014년 10조 원 대비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고, 모바일 배달애플리케이션 거래금액은 5년 전보다 10배*로 뛰었고, 배달의민족(60%)과 요기요(30%)의 매출이 42% 증가하여 5,800~6,96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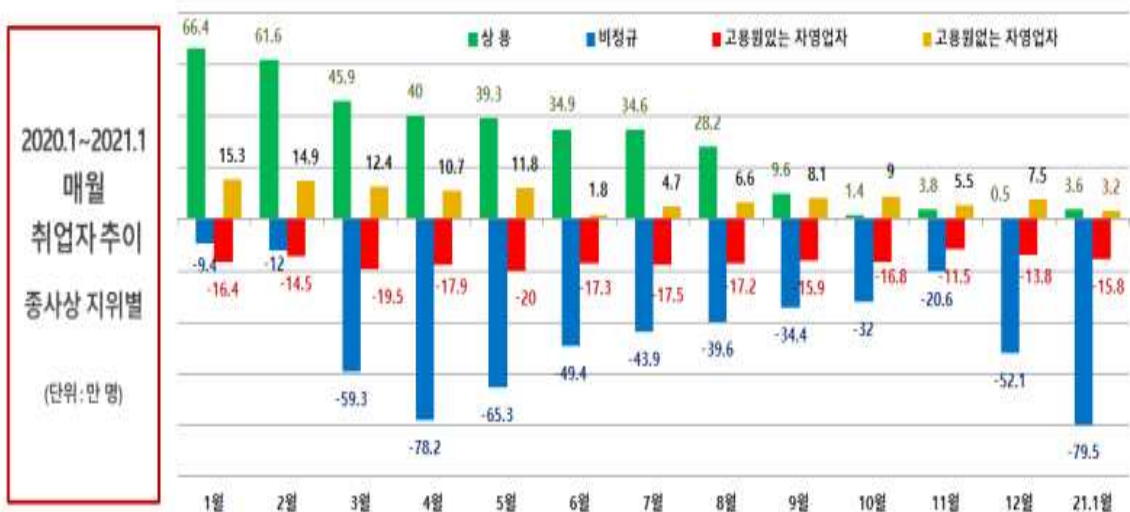
* 1조5000억(2015) < 4조 원(2018) < 11조 6000억(2020년)

2020년 주요 홈쇼핑 기업 영업이익률

기업명	영업이익(전년대비 증감율)
CJ오쇼핑	1,792억 원 (20.1% 증가)
GS홈쇼핑	1,579억 원 (31.5% 증가)
현대홈쇼핑	1,543억 원 (2.6% 증가)
롯데홈쇼핑	1,250억 원 (4.1% 증가)
NS홈쇼핑	642억 원 (20.5% 증가)

- 이처럼 디지털IT 대기업은 코로나 재난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고의 수익을 달성하였지만, 대면서비스, 중소기업·특고, 프리랜서, 비정규 등 취약계층의 집중 타격을 받음.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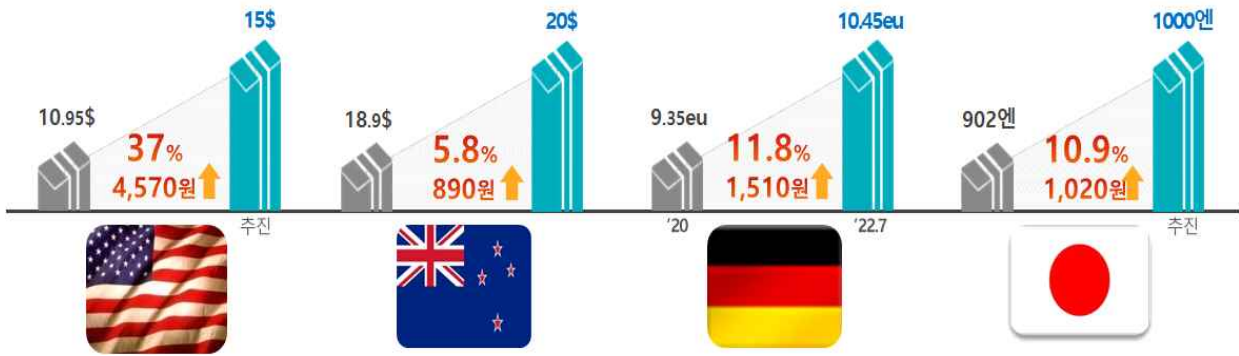
월별 취업자 감소 비중_고용형태별



- 2020년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임시일용 비정규직에 집중되었음.

3.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하는 주요국가

-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 사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선 경제 활성화의 선행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함.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는 내수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임금노동자들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함. 이를 위해 소비진작을 위한 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택하고 있음.



2020년 해외 주요국 최저임금인상

국가명	최저임금 인상 내용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37% 인상 시간당 10.95달러(1만2193원)에서 15달러(1만6689원)로 37% 인상 추진
독일	2022년 7월까지 10.45유로(14,091원)
호주, 뉴질랜드	호주 - 2020년 최저임금 19.84달러(17,100원)로 인상 뉴질랜드 -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뉴질랜드달러(이하 달러·약 1만5800원)로, 기존(18.9달러)보다 5.8% 인상
일본	내수진작 및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빈곤 해소를 위해 국가 평균 최저임금 1000엔(1만 330원) 인상 추진

1) 미국

-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을 추진한 바 있음.
- 경기부양정책에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최저임금 인상은 제외되어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였음. 이후 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하였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37% 인상(시급 15달러)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하고 있음.

2) 호주 및 뉴질랜드

- 호주 역시 2020년 최저임금을 19.84호주달러로 인상하였으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 뉴질랜드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20뉴질랜드달러로 인상(전년 대비 5.8%)함.

3) 독일 등 유럽

- 독일의 경우 2022년 7월까지 10.45유로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으며, 락다운을 경험한 영국 등

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음.

4) 일본

- 최근 전국 평균 1,000엔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4. 낙관적인 경기 회복을 예상하는 주요 지표들

-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실제로 3월 취업자는 13개월 만에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31만 4천 명이 증가하였고, 4월에는 65만 2천 명, 5월 61만 9천 명이 증가(전년동월대비)하여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국내외 주요 경제예측기관 전망 경제성장률

- (21.4.6) IMF -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 6.0% 성장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3.6%
- (21. 4. 14) LG 경제연구원 -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2.5% → 4%로 상향 (1.5%p 상향)
- (21. 4. 25) 현대경제연구원 - 2021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3% → 3.5%로 상향 (0.5%p 상향)
- (21. 4. 27) JP 모간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4.1% → 4.6% 상향(0.5%p 상향)
- (21. 4. 27) 아시아개발은행(ADB) -2021 아시아경제전망(ADO)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3.3% → 3.5%(0.2%p 상향)
- (21. 5. 27)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3.0% → 4.0%(1%p 상향)
- (21.5.31) OECD -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3.3% → 3.8%로 상향 (0.5%p 상향)
- (21.6.8) 세계은행(WB) -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4.2% → 5.6%(1.5%p 상향)

-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더욱 확연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고, 11월 집단면역까지 형성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상궤도로 완전히 진입하게 됨.
- 이렇게 경제성장을 낙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평균(4년간) 인상률은 7.7%로 적폐 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7.43%과 별반 차이가 없음.
- 또한 산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포함되어 실질 인상은 이보다 훨씬 낮음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역대 정부의 재임중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단위 :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6.3	8.3	9.5	9.9	5.2	7.4	7.7*

* : 2018~2021년까지 4년 평균

II. 최저임금 인상 근거

1. 생계비

- ILO의 최저임금 설정 권고안(R135)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지표로 절대적, 상대적 생계비를 모두 언급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욕구(needs), 일반적인 임금수준, 생활비와 그 변화(cost of living and changes therein), 사회보장급여, 상대적 생활 수준(living standards), 기타 경제적 요소들

- 2017년 제도개선 TF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실태생계비는 생활비, 생활 수준 개념에 부합하므로, 적절한 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해 그 사회에서 경제 사회적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도 존재함
-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과 빈곤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하며, 저임금 노동자 적정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함.

1)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생계비와 충족률

2020년 비혼 단신 및 가구원 수별 생계비 및 20년 최저임금 충족률

(단위 : 원, %)

	비혼 단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비	2,084,332	2,112,978	3,104,536	4,410,844	5,749,279
생계비 충족률 (20년 최저임금 기준)	86.1	85.0	57.8	40.7	31.2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210만 원이 넘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2021년도 비혼 단신 및 가구원 수별 생계비(예측치) 및 최저임금 충족률

(단위 : 원, %)

	비혼 단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비	2,121,850	2,151,012	3,160,418	4,490,239	5,852,766
생계비 충족률	85.9	84.7	57.7	40.6	31.1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 2021년도 생계비 예측치는 2020년도 실태생계비에 2021 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1.8%) 적용

* 물가상승률 전망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5월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생계비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2021년 발표한 물가상승률(1.8%)의 가중치를 더하여 고려해야 함.

- 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닌 복수의 가구원(2~3인)이 있는 가구임. 임금노동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므로 1인 가구, 비혼 단신 생계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로서 대표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 분포 (2020년 기준) 4인 가구(31.23%) > 3인 가구(23.35%) > 2인 가구(20.57%) > 1인 가구(16.24%) • 가구원 수별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 소득원 비율 (2020년 기준) 1인 2,112,978원 (2021년 최저임금액 대비 86.3%) 2인 3,104,536원 (2021년 최저임금액 대비 58.7%) 3인 4,410,844원 (2021년 최저임금액 대비 41.3%) 4인 5,749,279원 (2021년 최저임금액 대비 31.7%)
--

출처 :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21.6월, 최저임금위원회)

2) 가계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양 자녀 유무와 수

- 자녀가 없는 모든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300만 원을 밑돌지만 학업중인 자녀(학업자녀가 두 명인 가구) 또는 미취학 자녀 등 기타 자녀가 있을 때 크게 증가함.
-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어느 정도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가구생계비 측정이 되어야 함.

2. 유사근로자 임금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유사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협약임금인상률(3.2%,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아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었고, 2021년 1~3월의 월평균 임금상승률(명목)은 4.2%²⁾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5%보다 2.7%나 높은 인상률임.
-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실태 분석을 담당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회복 기대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에서도 5.5% 예측치를 발표한 바 있음.

<p>사업체노동력 조사 명목임금 상승률 4.2% (2021년 1~3월 월평균 임금)</p> <p>최저임금위원회 노동연구원 발표 21년 임금총액 기준 명목 임금상승률 예측치 5.5%</p>
--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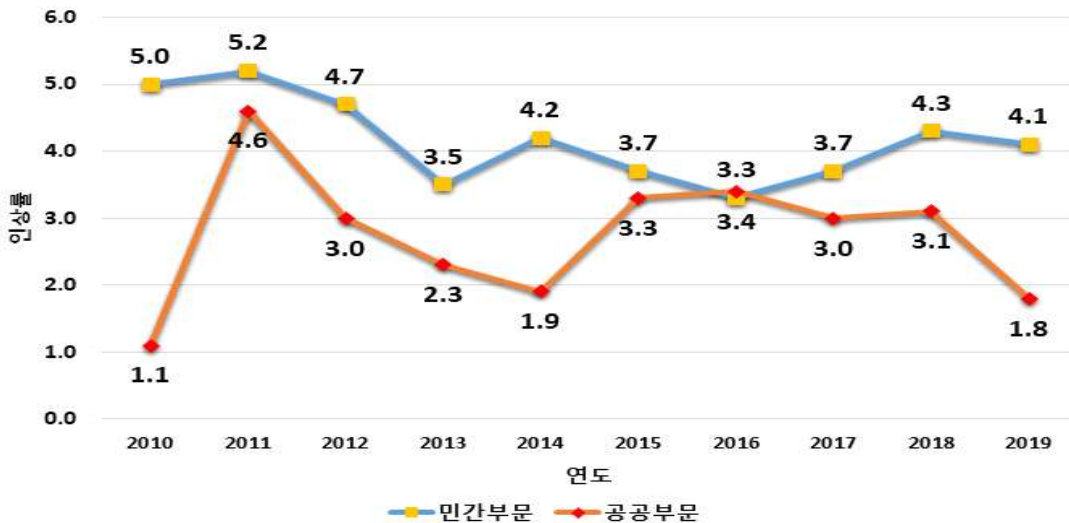
1) 2019~2020년도 임금 결정 동향

조사별 임금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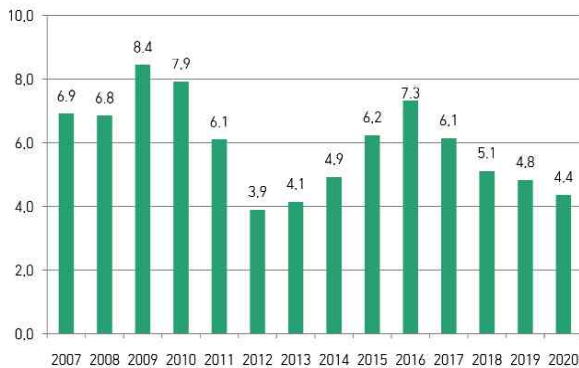
조 사 명	임금 종류	증감률	비 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임금총액	4.8%↑	전산업, 전규모(5인 이상), 전년동월대비 (2021년 3월 기준)
임금결정현황조사	총계	3.9%↑	2019년
	민간부문	4.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정액급여	2.8%↑	전체노동자 (2020년 기준)

- 2019년부터 최근(2021년 3월)까지 발표된 임금 결정현황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임금노동자들의 임금교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만 임금이 적게 오르며 임금 불평등만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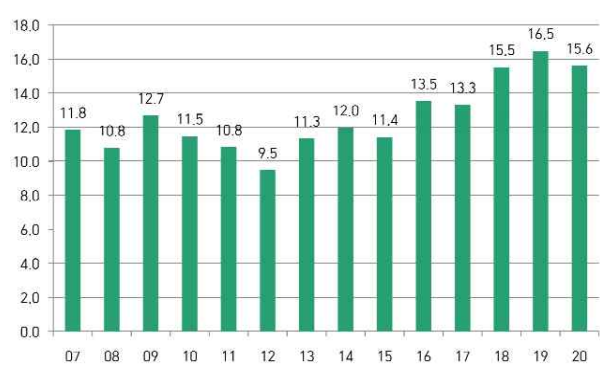
협약임금 인상률 변화 추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출처: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2021.6)

최저임금 미만근로자수, 미만을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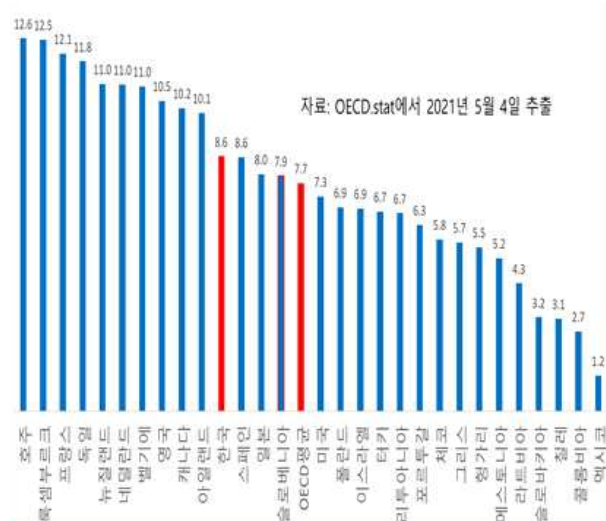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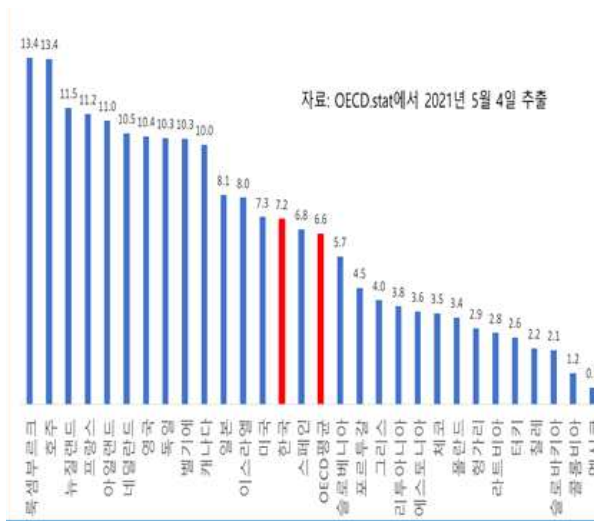
구분	조사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찰부가조사	임금근로자수	17,715	17,941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미만근로자수	1,916	1,698	2,084	2,271	2,224	2,670	2,661	3,111	3,386	3,190
	미만을	10.8	9.5	11.3	12.0	11.4	13.5	13.3	15.5	16.5	15.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근로자수	12,588	12,971	13,471	13,962	14,670	15,354	15,859	15,971	16,307	16,506
	미만근로자수	767	506	558	687	915	1,126	974	817	788	720
	미만을	6.1	3.9	4.1	4.9	6.2	7.3	6.1	5.1	4.8	4.4

출처: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2021.6)

-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찰부가조사 결과 2019년 16.5%에서 2020년 15.6%로 낮아졌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2019년 4.8%에서 2020년 4.4%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됨.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미만율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음.
- 오히려, 발표된 두 통계 모두 연간 신규채용되는 상용 노동자 규모가 약 70~80만 명 규모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3개월 미만 수습노동자’를 식별할수 없다는 한계,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회색지대 노동자 등의 미만율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시간당 최저임금(환율기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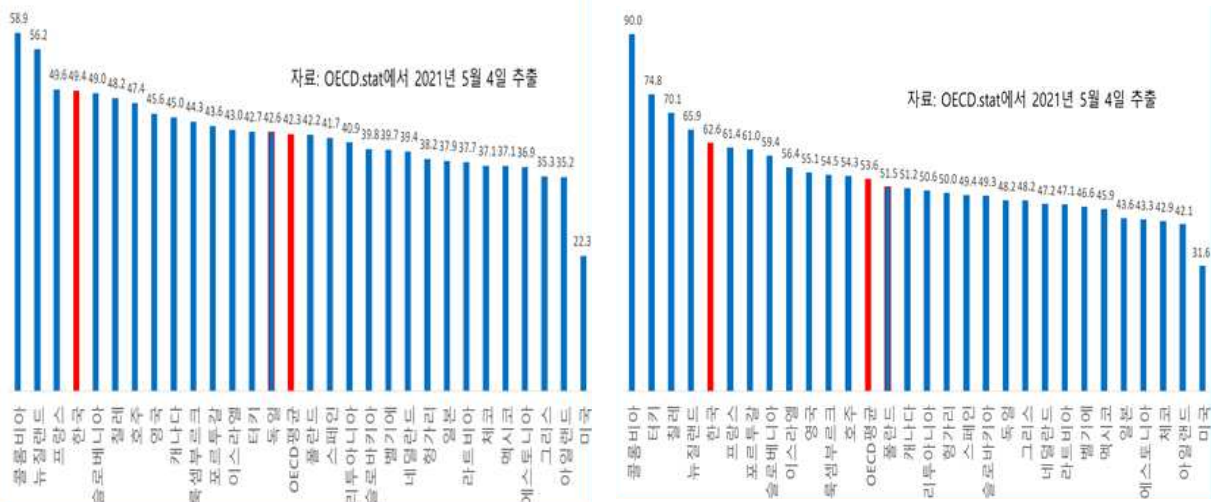
OECD 회원국 시간당 최저임금(구매력평가기준) (2019)



출처 : 소득주도성장특위 시장소득개선 소위 발표자료(21.5.12)

- 2019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US\$ 환율 기준 7.2달러, 순위는 29개국 중 14위이며, US\$ 구매력평가 기준 8.6달러, 순위는 29개국 중 11위로 중간정도수준임. 하지만,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8개국까지 포함하면 순위는 더욱 낮아질 수 있음.

OECD 회원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9) OECD 회원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9)



출처 : 소득주도성장특위 시장소득개선 소위 발표자료(21.5.12)

- 최저임금을 OECD 국가의 평균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 29개국 중 4위(49.4%)이며, 중위값 기준은 29개국 중 5위(62.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순위로 보이지만, 이는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을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1인 이상 포함하는 한국과 달리, EU의 경우 10인 이상, 일본은 5인인상 사업체 조사결과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의 주휴 수당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것임.
- 실제로 최저임금 발표자료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최저임금 평균값 기준 상대적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10인 이상)

(단위 : 원, %)

구 분				평균값 기준		
				시간당 임금	상대적 수준 (시간당)	
2019년 (8,350원)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총액	1인 이상	20,614	40.5
				5인 이상	22,740	36.7
				10인 이상	23,788	35.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상임금	1인 이상	17,629	47.4
				5인 이상	19,160	43.6
				10인 이상	19,700	42.4
2020년 (8,590원)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총액	1인 이상	15,274	54.7
				5인 이상	16,311	51.2
				10인 이상	17,351	48.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상임금	1인 이상	19,359	44.4
				5인 이상	21,267	40.4
				10인 이상	22,082	38.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상임금	1인 이상	16,712	51.4	
			5인 이상	17,988	47.8	
			10인 이상	18,376	46.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임금총액	1인 이상	15,627	55.0	
			5인 이상	16,654	51.6	
			10인 이상	17,619	48.8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2021)

2) 산입범위 확대에 의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 2018년 5월 28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월 1회 이상 발생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2)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였음.
-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르면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4년에는 전부 산입됨.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출처: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2019.1.)

주: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비율.

(1)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자료 기준

현물급여 지급 실태(연도별)

(단위 : %)

연도	현물급여 지급실태	식사제공 (식사운영포함)	통근차량 운행
2018		66.69	5.47
2019		58.77	4.18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2021)

- 산입범위 개편 첫 시기에 식사제공은 약 8%가 감소하였고, 통근차량의 경우에도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제공하던 식사제공과 통근차량 운행 등 복리후생이 줄어 든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미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

최저임금위원회 조사 산입범위 확대에 의한 실질임금 저하

① 최저임금(7,907원) 5% 인상시

	현행		현행 +기타수당		현행 +고정상여금		현행+기타수당 +고정상여금		법 개정 후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1. 7,530원이하	5.0	100.0	5.0	3.3	5.0	81.5	-	0.0	-	0.0
2. 7,531원~ 8,283원미만	-	-	0.1	6.5	1.6	6.8	0.0	4.1	1.9	33.8
3. 8,283원~ 9,036원미만	-	-	0.0	32.7	0.0	3.6	0.0	26.8	0.0	18.2
4. 9,036원~ 9,789원미만	-	-	0.0	13.7	0.0	2.3	0.0	14.0	0.0	12.0
5. 9,789원~10,542원미만	-	-	0.0	10.7	0.0	2.2	0.0	13.5	0.0	6.9
6. 10,542원~11,295원미만	-	-	0.0	5.8	0.0	1.4	0.0	8.1	0.0	7.0
7. 11,295원~12,048원미만	-	-	0.0	6.3	0.0	1.4	0.0	8.5	0.0	4.4
8. 12,048원~12,801원미만	-	-	0.0	4.2	0.0	0.6	0.0	5.8	0.0	3.4
9. 12,801원~13,554원미만	-	-	0.0	3.4	0.0	0.2	0.0	4.2	0.0	2.9
10. 13,554원~14,307원미만	-	-	0.0	2.6	0.0	0.1	0.0	3.5	0.0	1.3
11. 14,307원~15,060원미만	-	-	0.0	1.4	0.0	0.0	0.0	1.8	0.0	1.2
12. 15,060원이상	-	-	0.0	9.3	0.0	0.0	0.0	9.7	0.0	8.8
실질 인상률	5.0	100.0	0.2	100.0	4.2	100.0	0.0	100.0	0.6	100.0

주 1) 현행=기본급+통상적수당
 2) 고정상여금, 상여금: 12로 나누어 산정
 3) 시간당임금이 7,530원미만은 7,530원으로 가정하고 인상률 산정
 4)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기준, 사업체 노동력조사 2017년

② 최저임금(8,283원) 10% 인상시

	현행		현행 +기타수당		현행 +고정상여금		현행+기타수당 +고정상여금		법 개정 후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인상률	비중
1. 7,530원이하	10.0	100.0	10.0	3.3	10.0	81.5	-	0.0	-	0.0
2. 7,531원~ 8,283원미만	-	-	1.3	6.5	5.5	6.8	0.8	4.1	6.4	33.8
3. 8,283원~ 9,036원미만	-	-	0.0	32.7	0.0	3.6	0.0	26.8	0.1	18.2
4. 9,036원~ 9,789원미만	-	-	0.0	13.7	0.0	2.3	0.0	14.0	0.0	12.0
5. 9,789원~10,542원미만	-	-	0.0	10.7	0.0	2.2	0.0	13.5	0.0	6.9
6. 10,542원~11,295원미만	-	-	0.0	5.8	0.0	1.4	0.0	8.1	0.0	7.0
7. 11,295원~12,048원미만	-	-	0.0	6.3	0.0	1.4	0.0	8.5	0.0	4.4
8. 12,048원~12,801원미만	-	-	0.0	4.2	0.0	0.6	0.0	5.8	0.0	3.4
9. 12,801원~13,554원미만	-	-	0.0	3.4	0.0	0.2	0.0	4.2	0.0	2.9
10. 13,554원~14,307원미만	-	-	0.0	2.6	0.0	0.1	0.0	3.5	0.0	1.3
11. 14,307원~15,060원미만	-	-	0.0	1.4	0.0	0.0	0.0	1.8	0.0	1.2
12. 15,060원이상	-	-	0.0	9.3	0.0	0.0	0.0	9.7	0.0	8.8
실질 인상률	10.0	100.0	0.4	100.0	8.5	100.0	0.0	100.0	2.2	100.0

- 특히,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 5% 인상시 0.6%가 인상돼 최대4.4%가 삭감되며, 10% 인상시 2.2%가 인상돼 최대 7.8%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민주노총 조사결과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률과 인상액 변화

(단위: %, %p, 원)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액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	실제 인상률	인상률 격차	기존 산입범위 인상액	실제 인상액	인상액 격차
15	13.0	8.6	-4.3	245,770	162,710	-83,054
10	8.9	4.4	-4.5	168,910	82,730	-86,177
7	6.8	2.5	-4.3	129,900	47,310	-82,586

주 1) 최저임금 인상액은 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
 2) '실제 인상률'과 '실제 인상액'은 '현행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인상률과 임금인상액을 말함
 2)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7%, 10%, 15% 인상 시, 각각의 경우에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대상

자료: 민주노총 이슈페이퍼202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인상 삭감 효과(이창근)

- 조합원의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2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인상률은 8.6%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률 삭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45,770원이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삭감액 83,054원이 발생해 실제 인상액은 162,71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부터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 효과가 누적적으로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실질인상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3) 한국노총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월임금 변화

(단위: 만 원)

인상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0%	217	227	224	215	204	193	182
5.4%	217	227	224	215	215	215	213
6.0%	217	227	224	215	216	217	217
7.6%	217	227	224	215	220	224	227
8.9%	217	227	224	215	222	229	235

주1: 상여금 4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 기본급은 2018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된 임금노동자를 가정

주2: 2022~2024년에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0.0%, 5.4%, 6.0%, 7.6%, 8.9%일 때를 가정

- 주어진 가정 하에서 매년 7.6% 인상되면 2022년부터 월임금액 상승으로 전환되며, 2024년에는 월임금이 감소하기 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음.
- 2024년까지 2021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6.0%이며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상률은 7.6%임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감소를 모두 상쇄하기 위한 요구 인상률은 8.9%임. 만약,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없었더라면 여기에서 가정한 임금노동자의 2019년 월임금은 235만 원이므로 이 수준의 회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에는 매년 8.9%의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월임금 변화

	미만을	현행과 격차	미만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	동일 미만을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기본 인상률(가정)
정액급여	8.78%			
정액급여+특별급여(최임 25%이상)	8.65%	-0.13%	7.560	0.40%
정액급여+특별급여(최임 25%이상)+복리후생(13만원, 최임7%이상)	7.64%	-1.14%	7.736	2.74%
정액급여+특별급여(최임 25%이상)+복리후생(20만원, 최임7%이상)	5.83%	-2.95%	8.110	7.70%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계산

- 산업범위 개편으로 문재인정부 최저임금의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차감해서 봐야 함. 2.74%에서 7.7%를 차감해서 보면, 문재인정부의 개선치는 향후 20.47%가 아니라, 17.73%나 12.63%의 개선효과로 귀결될 것임

(4) 산업범위 확대에 의한 현장 위반사례 유형

유형	실제 사례
실질임금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되고 있음 - 사용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실질 임금의 저하를 가져와 단기 근속자와 장기근속자와의 임금체계가 무력화 - 전체 매출액의 75%가 인건비 구조인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는 현금수송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일 것(제조업, 사내하청)
통상임금 역전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입사자와 장기근속자의 임금격차가 사라지고 임금의 역전현상으로 현금수송노동자의 업무와 인력 운영의 어려움 - 입사 20년차 직원이 신입 계약직 직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음 - 임금역전 현상과 함께 3년차 무기직 직원부터 5급 12호봉 과장까지 통상임금 동일 - 최저임금 해소를 위해 복리후생비인 중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이미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여금에서 최저임금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상황 -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시 30여 년 근무한 직원까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이직률 및 업무 위험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산업범위 확대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발생으로 이직률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 - 현금수송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전문 인프라의 손실로 이어지면서 대형금융사고 위험성 또한 상승하고 있는 실정 - 비현실적 용역료 입찰 제도와 업무 감소로 노동자는 매년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사고 발생 위험 증가할 우려가 있음

휴게 시간 편법증가	- 평균 휴식시간 : 규정상 휴식시간 8.4시간, 실제 휴게시간 7.3시간 - 최저시급 미만자 비율 : 규정시간 기준 30.0%, 실근로시간기준 66.0%
상여금과 수당을 동시에 기본급화하거나 삭감하는 사례	-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고, 수당은 기본급화함 - 상여금 100%와 위험수당을 기본급화함 - 상여금 300%에서 100%를 삭감하여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생산수당 또한 삭감함
상여금과 수당 기본급 전환과 함께 유급휴일을 무급화하는 사례	- 상여금과 수당을 삭감하여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함

3.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는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선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다만,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동생산성이란 사업체 차원에서 노동자 개인의 생산성을 토대로 그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줘야 하며, 소득분배율의 경우 종사상 지위별, 소득분위별로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려돼야 함.

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동생산성 지수 (전산업)	98.8	97.3	100.6	101.8	100	101.6	104.6	106.5	107.7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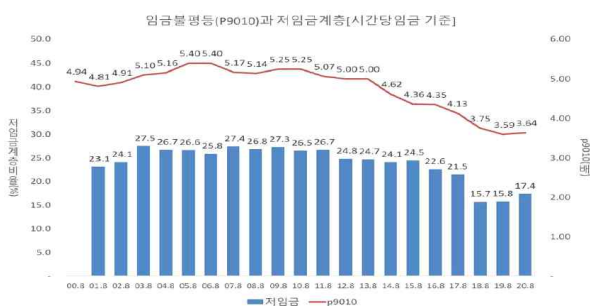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2021)

- 2020년 노동생산성지수 전산업 전년 대비 2.0% 증가한 109.8로 나타남

※ 시간당 노동생산성 (2020년 기준)
 (한국) 40.5 (덴마크) 75.0 (독일) 66.4 (일본) 46.8 (미국) 71.8 (OECD 평균) 54.5
 출처: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위원회(2021.6)

- 전산업 GDP(불변가격)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을 비교하면 2019년 현재 한국은 40.5달러, 일본 46.8달러, 미국 71.8달러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것은 자영업자, 임시직의 취업자 비중이 높고, 낙후한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에 의한 것임.

임금불평등(p9010)과 저임금계층(시간당임금)



임금불평등(p9010)과 저임금계층(월임금)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단위: %)

	시간당임금 기준				월 임금총액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저임금	21.5	15.7	15.8	17.4	20.5	17.9	21.6	21.2
중간임금	56.6	60.1	60.8	60.0	50.4	57.3	55.4	58.1
고임금	21.9	24.1	23.5	22.7	29.0	24.8	23.0	20.7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또한,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살펴본다면, 2017년 8월 21.5%에서 2018년 8월 15.7%, 2019년 8월 15.8%로 감소했던 저임금계층 비율이 2020년 8월에는 17.4%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도 21% 초반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임금불평등(2019년~2020년)

		시간당 임금 기준			월 임금 기준		
		2020(8월)	2019(8월)	증감	2020(8월)	2019(8월)	증감
평균임금		15,627원	15,274원	353원	268만원	264만원	4만원
중위임금		13,040원	12,434원	606원	240만원	230만원	10만원
경계값	하위10%	7,599원	7,368원	231원	80만원	89만원	-9만원
	50%	13,040원	12,434원	606원	240만원	230만원	10만원
	90%	27,632원	26,480원	1152원	500만원	480만원	20만원
임금 불평등	p9010	3.64	3.59	0.05	6.25	5.39	0.86
	p5010	1.72	1.69	0.03	3.00	2.58	0.42
	p9050	2.12	2.13	-0.01	2.08	2.09	-0.01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3.59배에서 3.64배로 확대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되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시간당 임금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9년 8월 15,274원에서 2020년 8월 15,627원으로 353원 증가하였으며, 또한, 월 임금총액 평균값은 2019년 8월 264만 원에서 2020년 8월 268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하였음.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남성	15,741	15,878	16,781	17,410	17,788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10,555	10,996	11,870	12,618	12,924	67.1	69.3	70.7	72.5	72.7
정규직	16,795	16,698	17,523	18,064	18,484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9,312	9,676	10,400	11,360	11,615	55.4	58.0	59.3	62.9	62.8
(남)정규직	18,773	18,584	19,445	20,012	20,392	100.0	100.0	100.0	100.0	100.0
(남)비정규직	10,509	10,727	11,422	12,419	12,846	56.0	57.7	58.7	62.1	63.0
(여)정규직	13,278	13,412	14,247	14,831	15,330	70.7	72.2	73.3	74.1	75.2
(여)비정규직	8,284	8,804	9,556	10,471	10,562	44.1	47.4	49.1	52.3	51.8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종사상 지위별로도 임금불평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역시 62.8로 전년보다 악화되었으며,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72.7%에 불과하며, 임금불평등의 피해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임금불평등 추이(2017년~2018년)

	시간당 임금 기준			월 임금 기준			
	2019(8월)	2019(8월)	증감	2018(8월)	2019(8월)	증감	
평균임금	14,607원	15,274원	667원	256만원	264만원	8만원	
중위임금	11,513원	12,434원	921원	210만원	230만원	20만원	
경계값	하위10%	6,908원	7,368원	460원	90만원	89만원	-1만원
	50%	11,513원	12,434원	921원	210만원	230만원	20만원
	90%	25,905원	26,480원	575원	454만원	480만원	26만원
임금 불평등	p9010	3.75	3.59	-0.16	5.04	5.39	0.35
	p5010	1.67	1.69	-0.02	2.33	2.58	0.25
	p9050	2.25	2.13	0.12	2.16	2.09	-0.07
	Gini계수	0.3098	0.2988	-0.0011	0.3289	0.3250	-0.0039

출처: 김유선(2020.1.6),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하위10% 대비 상위10% 임금수준의 비율 (P9010)은 2018년 3.75배에서 2019년 3.59배로 감소, 지니계수는 0.3098에서 0.2988로 감소함
- 하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4배에서 5.35배로 증가하였고,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0.3289에서 0.3250로 감소함.
- 특히,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하위10% 월 임금은 1만 원이 하락하였지만, 상위 10%의 월 임금은 26만원이 증가하며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 비교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비기간제		
'19. 6~8월 평균 (만원)	264.3	316.5	172.9	186.0	180.6	207.0	92.7	185.8
'20. 6~8월 평균 (만원)	268.1	323.4	171.1	185.7	187.7	174.1	90.3	185.4
증감 (만원)	3.8	6.9	-1.8	-0.3	7.1	-32.9	-2.4	-0.4
증감률 (%)	1.4	2.2	-1.0	-0.2	3.9	-15.9	-2.6	-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0.8월

- 또한, 코로나 사태에서 정규직 임금은 323.4만 원으로 2.2% 증가. 반면, 비정규직은 171.1만 원으로 0.2% 감소하여 종사상 지위별 임금 불평등은 및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음.

III. 최저임금제도 개선

1. 가구생계비 반영

- ILO협약(제131호)은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도 다양한 가구생계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2.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됨에 따라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음.
- 산입범위 개악 이전처럼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실질임금 삭감을 막고,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취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며, 구분 적용이 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점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음. 따라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5.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

- 수습노동자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수습 노동자의 상당수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이들 청년노동자의 노동력·임금착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6.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따라 가사노동자에게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 적용

7. 최고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규범력 확보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과 연계한 최고임금제 도입이 필요함,
-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대기업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초과액수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담금 부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저임금노동자, 저소득층,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지원금을 이용함.

8. 도급인 책임 강화

- 하도급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야 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도급인의 책임사유에 포함시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과 수급인 소속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함.

9.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근로기준법과 민법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어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미약하여 큰 효과가 없음. 이에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도록 함.

IV.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이 겪는 어려움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외면’에 문제의 본질이 있음. 무분별한 가맹점 난립(편의점 점포 1개당 수용인원 : 한국 1,250명, 일본 2,200명으로 약 2배 차이)을 비롯한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높은 임대료 등 고질적인 ‘갑’의 횡포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여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 재난 특수를 누린 기업들의 사회연대 차원의 한시적 법인세를 증여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경제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함.

1. 코로나19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K자 경기회복과 성장을 보이고 있어 경제사회적 양극화·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디지털·IT대기업, 비대면산업(홈쇼핑 등온라인거래)은 재난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반면에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과 관광, 여행, 운수 등 경기민감 대면서비스업종은 생존권 위기에 놓여 있음.
- 이에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 차원에서 초과이익공유세를 재난시기에 한시 도입하면 증대한 세수입 분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및 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어 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에 견인차가 될수 있을 것임.
- 초과이익공유세는 코로나19로 재난 특수를 누린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기타 모든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부가세(5% 이상)를 한시적으로 22년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추가과세함.

- ✓ 대상 : 최근 3년동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한 1,000인 이상 규모 대기업
 - ✓ 기준 :
 - ① 현재 부과중인 법인세와 기타 모든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부가세(5% 이상) 형태로 한시적으로 22년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추가과세
 - ② 창출된 세액에 대해선 반대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지원
- ※ 해외에서도 이미 코로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영국은 2023년까지 법인세를 현행 19%에서 25%(6%p) 증세하며, 미국 역시 일부 주(州) 등에서 증세할 예정

3) '20년 영업이익 급증한 디지털·IT대기업, 홈쇼핑업체 : 삼성전자 35조9,939억원 (29.6%↑), LG전자 3조1,950억원 (31.1%↑), SK하이닉스 5조126억원(18.2%↑), 현대자동차 1조6,410억원 (40.9%↑), SK텔레콤 1조3,493억원(21.8%↑), 넥슨 1조1907억원(18%↑), 카카오 4,560억원(121%↑), CJ 1조3,595억원(51.6%↑), CJ오쇼핑 1,792억원(20.1%↑), GS홈쇼핑 1,579억원(31.5%↑), NS홈쇼핑 642억원(20.5%↑) 등

2. 정부부처 국회 보고 및 제도개선 방안 입법화 달성

-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부칙으로 정부의 각 부처가 2022년 3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이 가칭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히 입법화함.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방안
-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방안
- 편의점 출점 제한, 각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 방안
- 기타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2) 법무부장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반값 임대료 실현 방안

3) 기획재정부장관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4)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 방안
-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기구 설립 방안

5) 고용노동부장관

-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 편의점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결권 등 권리보장 방안
-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방안

3. 공정경제3법이 아닌 ‘경제민주화5법’ 추진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 공정경제3법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많이 미흡함. 공정경제3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경제민주화5법’ 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심화될 경제양극화의 최소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함.

※ ‘공정경제3법’ 의 문제점

- 상법 개정안에서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주주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가 제외됨.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자·손자회사 지분보유 강화 대상에서 기존 대기업집단이 제외됨.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등 위법행위에 대한 교정수단 등이 제외됨.

※ 경제민주화 5법

- 상법 개정 :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통한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성 확보, 이중(다중)대표소송 도입을 통한 자회사 견제, 단독주주권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 공정거래법 개정 : 자·손자회사 지배 금지 및 지분보유 강화대상 확대 등 지주회사 규제 강화
- 하도급법 개정 : 기술탈취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 강화 및 손해액 추정 법률적근거 마련, 기술탈취로 피해받은 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명령제도’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무휴업명령권 및 영업시간제한 명령권 부여, 지역협력개발서 작성시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지역고용활성화 등 포함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재개정 : 기술유용행위를 정의, 위·수탁기업간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협약체결 미이행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탁기업의 협약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손해액의 3배) 등